

해양·수산관련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29호, 2012. 01. 03

- 수면비행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그 검사 주기·무선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며, 항해·무선통신 장비의 발달에 따라 평수구역을 확대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한 기관개방검사의 면제 기준을 신설함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32호, 2012. 01. 06

-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0799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으로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 특례제도 및 수상레저교육사업 제도 등이 도입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검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운영기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등록번호판의 재발급 절차, 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검사의 절차 및 방법을 대폭으로 정비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장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 특례제도 신설

(제1조의 4)

- 외국인이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 종류 및 규모를 정함
- 수상레저교육사업 제도 도입(제30조의2)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절차 마련(제21조 제4항)
 -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 첨부(훼손된 경우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절차, 방법 및 준비사항 정비(제26조, 제26조의2)
 - 안전검사 신청 시, 도면 및 복원성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2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와 그 외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하려는 5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는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등 동기구가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이에 준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총톤수 측정(모터보트 및 동력요트만 해당), 서류(도면, 복원성자료)의 확인을 신설하고, 그 외 승선정원산정, 항해구역 지정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무선설비 비치, 상가 또는 거선검사 준비, 국제항해에 종사할 경우, 협약에 따른 검사준비 신설

- 현존 수상레저기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항해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할 시에는 소급 적용
- 주요 치수(길이, 너비, 깊이) 등 변경시 이 기준 적용
- 다른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에 대한 경과조치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 제정

▣ 해양경찰청고시 제2012-1호, 2012. 01. 06

- 기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일반사항, 검사의 준비, 항해구역 지정, 복원성, 무선설비 및 승선정원계산 방법 등을 정함
- 길이 6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사항을 기구 종류별로 정함
 - 모터보트 :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구멍·소방설비, 항해용구 및 속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동력요트 : 선체, 범장, 기관, 배수설비, 구멍·소방설비,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항해용구 및 속구, 항해시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고무보트 : 제3편의 길이 6미터 미만 고무보트 규정을 따르도록 함
- 길이 6미터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사항을 기구 종류별로 정함
 - 수상오토바이 : 종전 안전검사 기준과 동일
 - 고무보트 : 종전 안전검사 기준과 동일
 -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모터보트는 종전 안전검사 기준과 동일하며 동력요트에 대한 검사 사항 추가
- 부 칙
 - 현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4. 수상레저안전실무편람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73, 2012. 01. 06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함
 - 안전검사는 안전검사점검표를 활용하여 집행
 - 총톤수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측정
 - * 수상오토바이 및 고무보트에 대하여는 총톤수 측정 제외
 - 타법에 따라 등록 또는 검사를 받아 오던 기구에 대하여 검사방법 및 절차 마련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당 국제협약(ILL, SOLAS, MARPOL, ITC 등)에 따른 검사준비를 하도록 함
 - 외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레저기구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 검사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5.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34호, 2012. 01. 06

-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0801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으로 보호수역제도, 해사안전 관리계획제도, 해양시설 보호수역제도,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항행장애물 제거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보호수역 입역 허가 및 입역 통지의 기준·절차를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역의 범위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장애물의 크기·형태 및 구조 등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선박에 신고 항행할 수 없는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정함

6. 선원법 일부개정

▣ 법률 제11188호, 2012. 01. 17

- 「선원법」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항내뿐만 아니라 항계 밖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항만 예선의 경우, 항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항계 밖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등 항행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이나 해석을 둘러싸고 상당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바, 항만예선은 항행장소에 관계없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이나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 법률 제11197호, 2012. 01. 17

-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약물·환각 물질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한편, 음주 관련 벌칙 적용이 제외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운항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8.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38호, 2012. 01. 18

- 종전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선박톤수를 측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특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톤수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톤수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선박에 대한 톤수측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9.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620호, 2012. 02. 03

-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 노동인증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기준,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의 종류와 그 가입방식을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에 걸쳐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원송환 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비(제5조 및 제32조)
 -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의 범위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등으로 정하고, 재해보상보험은 선원이 보험자 등에게 직접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선원송환 보험 및 선원재해보상 보험의 범위가 명확해지며, 보험금 등에 대한 선원의 직접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의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어선원의 통상임금 등 산정기준 개선 (제19조의2)
 -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 평균임금을 월 고정급 기준으로 120퍼센트에서 135퍼센트 등으로 각각 15퍼센트 포인트씩

상향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 재해보상 및 유급휴가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 평균임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하여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세부 검사기준을 정하고,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의 세부내용을 정하며,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발급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0.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6호, 2012. 02. 10

- 4대강 등지에서 운항예정인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설비기준 미비에 따른 소유자·건조자의 불편을 없애고 공기부양정의 안전성 확보
 - 선체구조 기준을 정함
 - 부력기준, 창구 및 기관실 구의 코밍높이, 스커드 및 랜딩패드의 구조기준 등
 - 배수설비 및 양묘설비 기준을 정함
 - 기관설비, 전기설비 기준을 정함
 - 기관요건, 연료유 탱크의 구조, 전기설비

성능기준 등

- 구명 및 소방설비, 거주 및 탈출설비 및 항해 설비 기준
 - 평수구역 공기부양선의 구명부환 비치 수량, 소화기 비치수량, 객실 방화요건, 항해용구 비치기준 등

1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 법률 제11321호, 2012. 02. 17

- 최근 해운업계의 새로운 추세는 영업을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으나, 우수한 해기사를 보유하고 선박 및 선원관리 경험이 풍부한 선박관리산업 대부분이 영세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박관리산업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시책의 강구,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선박관리전문가 육성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인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하고 국외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임
- 선박관리산업을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제2조).
-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4조)

-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외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6조)
-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12.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1호, 2012. 02. 20

- 유탱커등의 폭발 및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유탱커등(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 등 탐재를 의무화함
- 국내항해 운항 유탱커등(유탱커·액화가스 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에 대하여 2012. 7. 1.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 시부터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 1개 및 예비품을 추가 비치(제87조제2항 관련)

13.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5호, 2012. 02. 21

- 국내연안에서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레이더설치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국제해상 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 사항을 반영함
- 국제항해 여객선의 거주구역 등 탈출설비 관련(제49조)
 - 모든 여객실의 출구표시를 하는 보조등이 본선의 주전원 기능이 정지된 경우 자동으로 켜지고 30분 이상 조명이 가능토록 요건 변경
- 항해용 간행물 비치대상 선박 및 PDF 파일로 비치할 수 있는 선박을 명확히 함(제93조)
 - 항해용 간행물 비치대상 선박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
 - 해도 외의 항해용 간행물을 PDF File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 가능토록 함

(국내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한정)

- 국내연안에서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해용 레이더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함(제94조)
 - 설치대상 :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 100톤 이상 선박
 - 설치시기 :
 - 1)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 '12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 2) 총톤수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의 선박 : '1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 도선사용사다리 요건 변경(제102조)
 - '12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비치하거나 교체하는 도선사용사다리는 개정된 요건에 적합한 도선사용사다리를 비치하여야 함
 - 도선사용승강기 사용을 금지함
- 레이더반사기 설치 면제 선박을 확대함(제108조)
 - 레이더반사기 설치 면제 선박 (중전) 야간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FRP제 및 목제 선박 (개선) 야간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30톤 미만 FRP제 및 목제 선박

1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 법률 제11344호, 2012. 02. 22

- 하천·호소와 바다로 구분된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체계를 내수면과 해수면의 구분에 따라 정비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 출항

- 전 승객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에 따라 손실을 입은 도선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등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에 벌칙을 상향조정함
- 현행 유선·도선의 영업구역인 '하천·호소' 및 '바다' 대신 '내수면'과 '해수면'의 개념을 도입하고,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와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명확히 함(제2조 등)
 - 유선·도선사업자와 선원에게 출항하기 전에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신설, 제42조제1항)
 - 휴업·휴지 중인 유선·도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휴업·휴지 중에 영업 외의 목적으로 운항하는 유선·도선의 경우에도 출항·입항을 기록·관리하도록 명확히 함(제25조)
 - 관할관청은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에 따라 손실을 입은 도선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법률 제11353호, 2012. 02. 22

-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조류가 가장 많이 자라나는 시기인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제11356호, 2012. 02. 22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감척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에 따른 어업환경의 변화를 포함함

17.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628호, 2012. 02. 22

- 해기사(海技士)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의 유형을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또는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연안수역을 운항하는 예선(曳船)으로서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 1명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일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시키도록 하여 항해사의 운항과실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18.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649호, 2012. 03. 02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어선에 어선위치 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0847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19.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6호, 2012. 03. 05

- 복합식 구명동의 요건 신설

20.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12호, 2012. 03. 13

-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하였거나 할당 예정인 800MHz 및 900MHz 대역에서 국제표준과 맞는 LTE용 장비의 제조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규칙의 이동통신용 기술 기준을 일부 개정함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제82조, 별표104, 별표105)
 - 할당 예정인 819~824MHz/864~869MHz 대역에

- IMT 표준 기술방식인 LTE용 장비의 제조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 추가함
- 기할당된 800MHz와 900MHz 대역의 단말기 간 보호기준을 완화하여 국제공동 단말기 제조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1.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중앙전파연구소 고시 제2012-2호, 2012. 03. 14

- 초단파 무선전화 선택호출장치(VHF-DSC)와 위성항법장치를 의무설치한 선박국은 두 장비를 항상 연결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조난 발생 시 선박의 위치를 수색구조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고시 관련 근거에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어선법」 제3조, 제5조 추가
 - 선박의 조난구조 및 인명 안전을 위해 평소에 VHF-DSC 장비와 위성항법장치를 항상 연결된 상태로 운용토록 제8조 3항 신설
- 아날로그 TV에 대한 수신화면 평가기준은 고시되어 있으나, 디지털 TV에 대한 수신화면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방송 전환환경에 적합하도록 함
 - 디지털방송의 수신화면 평가기준을 3개 등급으로 정하여 제107조 제1항에 추가

22.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4호, 2012. 03. 16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어선에 어선위치발신 장치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0847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령 30년 이상의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외에 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선체두께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체 파손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며,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의 준비사항에 주기관 등의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시험 준비를 추가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강화함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을 정함(제42조의2)
 - 적용대상 :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전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함
 - 적용시기 :
 -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어선 : 2012년 12월 31일까지
 - 2) 총톤수가 2톤 이상 5톤 미만인 어선 : 2013년 7월 15일까지
 - 3) 총톤수가 1톤 이상 2톤 미만인 어선 : 2014년 7월 15일까지
 - 4) 총톤수 1톤 미만인 어선 : 2015년 7월 15일 까지
- 내수면어선이 특별검사 또는 어선검사증서상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49조)
 - 내수면어선을 4대강 또는 저수지 등의 환경정화 사업에 사용할 경우 특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내수면어선이 주기관 또는 최대승선인원 변경 시 임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노후어선에 대한 검사사항 강화함
 - 선체두께측정 주기 및 범위를 확대함

1) 선령 30년 이상 어선의 경우 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선체두께 측정토록 함(제55조 제2항 제2호)

2) 선령 20년 이상 어선의 선체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함

(종전)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 중앙부 0.4L 간의 3단면

(개정)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 중앙부 0.4L 간의 3단면, 기관실의 전단·후단 격벽 및 해수 흡입구 (SEA CHEST)

※ 규칙 시행(2012. 3. 16)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제1종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 시험을 하도록 함.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별표 9)

※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

- 제2종 중간검사 시에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 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을 시행토록 함(별표 9)

※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2종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

23.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29호, 2012. 03. 21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관련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한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및 심사위원회 개최 방법 등을 정함
- 관리선박 및 관리 수역의 정의 도입(제2조)

- 해상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 진단 관련 용어 정의 개정 및 용어 신설
- “관리선박”, “관리수역” 용어 정의 추가
- 안전진단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제8조)
 -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 및 사전검토 등의 의견 제시근거 마련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의 범위 및 업무 절차 마련(제32조~제36조)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의 범위 지정
 -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정의(별표 4)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의 업무처리 절차 근거 마련
- 1·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 규정(제37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별 업무범위 지정을 통한 진단대행기관의 수행 가능 안전진단 대상 사업 구분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관련사항 마련(제38조~제41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및 자격, 경력 산정 제시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보유 장비기준 제시

2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40호, 2012. 03. 28

- 동일한 공정으로 대량 생산되는 어선용품의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어선용품 생산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어선용품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5.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717호, 2012. 04. 10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197호, 2012. 1. 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행위, 음주측정 거부행위 및 음주운항 금지명령 위반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러목 신설)
 - 선박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0.11퍼센트 이상 0.26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0.26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운항자의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머목 신설)
 - 선박운항자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1회 위반은 50만원, 2회 위반은 100만원, 3회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음주운항 금지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버목 신설)
 - 선박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음주 운항이나

음주도선 등을 못하게 하는 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6. 부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15호, 2012. 04. 25

- 선체블록 등 대형화물 운송에 사용하는 부선의 선미에 거주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수에 거주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7.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2012. 05. 18

-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검사 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절차 및 방법, 해사노동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을 정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 등을 정하며,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에 걸쳐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선원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체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선원의 송환비용 범위 확대(제19조 신설)
 -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선원의 송환비용에 선원의 개인화물 운송비용과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 비용을 추가하도록 함

- 종전에는 선원의 송환비용이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되어있으나 앞으로는 화물 운송비용 및 의료관리비용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안정적 귀국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어선원의 유급휴가일수 확대(제46조의5)
 - 원양어업, 대형선망어업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 승무한 경우에 부여받는 유급휴가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함
 - 다른 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유급휴가를 받아온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어선원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원의 직무자격,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체도 등의 정비(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53조, 제54조, 별표 2 및 별표 3)
 - 2012년부터 시행되는 “선원의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 근로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 선원의 의무교육과정, 선원의 건강진단 항목 및 건강진단 판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국제기준에 맞는 자격기준, 교육훈련기준, 의료관리 및 건강기준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제고 및 외국에서의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의 대응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해사노동인증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의 세부기준 마련(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 10까지 및 별표 6 신설)
 -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절차, 임시인증검사와

특별인증검사의 사유, 인증검사관의 자격 기준,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이의 신청절차 및 인증검사 수수료 등을 정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절차,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을 규정함

- 선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시행되는 해사 노동인증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근로내용 및 생활기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8.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2-3호, 2012. 05. 18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무선·구명 설비 등 안전검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기구에 사용하는 선박용 물건 범위 확대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관련)
 - 도입된 기구 중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증서 또는 ISO 식별 번호가 있는 기구에 설치된 선박용 물건(선등, 컴퍼스, 기적, 무인기관실 소화장치에 한정)은 외관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 경우 인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표시된 물건(ex. 공산품으로 인정받은 구명조끼 인정, 구명보조복, 부력보조복 인정 불가)
- 기구에 육상차량용 기관사용 인정(제5조 제4항 관련)
 - 타법(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라 예비 검사를 받은 경우 인정
 - ※ 기구에 설치되는 디젤기관도 「해양환경

- 관리법」에 따라 Nox 적용 대상임
- 승선정원 16인 이상의 기구에 대변소 설치 의무화(제5조 제5항 관련)
 - ※ 기구에 대변소를 설치 시에는 「해양환경 관리법」 적용 대상임
- 다음 경우에는 설치 면제
 - 1)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기구
 - 2) 총톤수 5톤 미만 기구에 휴대용 대변처리 기구 비치한 경우
 - 3) 고무보트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 비치한 경우
- 기구의 안전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을 명확히 함(제6조 관련)
 -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 : 별표 2
 -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에 준하는 검사 : 별표 3
 - 상기 외에 신규검사 : 별표 3의 2
- 기구의 항해구역 확대((제7조 관련)
 - 수상오토바이만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한정하여 지정함
 - 고무보트, 길이 6미터 미만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도 연해구역 이상 항해구역 지정 가능
 - ※ 연해구역 이상 지정 시 해당 설비 등 확인 필요
 - 평수구역을 지정받은 기구의 활동 범위 확대
 - (중전) 가까운 육지로부터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
 - (개선) 평수구역 끝단 및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부터 1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 항해 가능,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 지정받은 기구와 함께 500미터 이내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향해할 수 있음(ex.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평수구역 요트가 요트대회 등 참가 시 연해구역 요트와 500미터 이내로 향해 시 연해구역 향해 가능 의미)
- 고무보트에 승선정원 13인 이상 인정. 이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는 고무보트에는 복원성 기준 적용(제8조 관련)
 - 승선정원이 13인 이상 모터보트, 동력요트 및 사업용 고무보트에 한정하여 복원성 기준 적용
- 연해구역 이상을 향해하는 기구(모터보트, 동력요트 및 고무보트)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를 다양화함(제9조 관련)
 - EPIRB → EPIRB 또는 AIS, RFID 등
 - VHF/DSC → VHF/DSC 또는 TRS 등
- 평수구역을 향해하는 기구의 승선정원 계산 시 적용하는 계수 변경(제10조 관련)
 - 0.30㎡ → 0.45㎡
- 선체구조강도 확인 대상을 건조에 착수한 때 부터 수행하는 기구로 한정함(제12조, 제53조)
 - 종전 :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변경 : 사업용 총톤수 2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개인용 총톤수 5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모터보트 기관의 검사 시 시동시험 및 운전 시험 시행 대상을 신규검사로 한정함(제28조)
 - 종전 :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시행
 - 변경 : 신규검사로 한정
 - ※ 정기검사 시에는 별표 3의 2에 따라 효력 시험만 시행
 - ※ 제28조에 따라 시동시험 및 운전시험 시
- 기관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란 제5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함
- 자기점화등 및 로켓낙하산신호 등 야간 조난 신호 장비와 중복되는 사항 삭제(제5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제77조, 제78조)
- 무인기관실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기구를 명확히 함(제48조, 제80조)
 - 승선정원 13인 이상 연해구역 이상을 향해 구역으로 하는 기구
 - ※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구조상 설치가 곤란 등) 휴대식 소화기 1개로 대체 가능
- 총톤수 2톤 미만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에 비치하는 소화기 수량 완화(제49조, 제81조)
 - 소화기 4개(길이 12미터 미만 2개) → 1개 (총톤수 2톤 미만 한정)
- 고무보트가 연해구역 이상을 향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설비를 추가 하여야 함(제107조)
 - 제9조(무선설비), 제22조(조타장치), 제41조(구명설비), 제42조(팽창식 구명 뗏목의 정비), 제43조(구명부환), 제45조(자기발연신호), 제47조(역반사제), 제49조(소화기 비치), 제51조(항해용구 및 속구 등)
- 길이 6미터 미만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가 연해 구역 이상을 향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설비를 추가하여야 함(제119조)
 - 모터보트 : 제9조(무선설비), 제22조(조타 장치), 제41조(구명설비), 제42조(팽창식 구명 뗏목의 정비), 제43조(구명부환), 제45조(자기발연신호), 제47조(역반사제), 제49조(소화기 비치), 제51조(항해용구 및 속구 등)
 - 동력요트 : 제9조(무선설비), 제73조(구명 설비), 제74조(팽창식 구명 뗏목의 정비),

제75조(구명부환), 제77조(자기발연신호), 제79조(역반사재), 제81조(소화기 비치), 제82조(조타장치), 제84조(항해용구 및 속구 등)

29.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법률 제11427호, 2012. 05. 23

- 현행법은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어도(魚道)를 설치하고 사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어도의 상당수가 낡고 훼손된 것이 많아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하천의 관리주체도 국가 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주로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어도의 설치와 관리 주체도 달라 어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도의 설치·관리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도종합관리계획, 시·도 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 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어도의 설치와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어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어도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어도의 설치와 사후관리, 어도의 개발 및 보급,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어도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시·도 어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제19조의3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와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어도의 관리·유지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등을 하게 하고,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의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7 신설)

30. 전파법 일부개정

▣ 법률 제11451호, 2012. 05. 23

-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국민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지고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사업자로서 하여금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는 것임

31. 선박등기규칙 전부개정

▣ 대법원규칙 제2413호, 2012. 05. 29

- 선박등기부 전산화 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 처리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과 「선박법」(법률 제8621호)의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등을 정비함
- 현재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는 삭제하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등기규칙」 준용조문을 정비함(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제21조)

3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법률 제11479호, 2012. 06. 01

-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함
- 해양시설 이외에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용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 채취,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양개발행위 등에 대비하여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 협의 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 규모 축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하도록 함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제·방지용 자재·약제 등을 제작·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33. 해운법 일부개정

▣ 법률 제11480호, 2012. 06. 01

- 수면비행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동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를 해양 분야 관련 법률에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며,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 허가제와 압류선박의 예외적 운항 허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건조 및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권한의 위임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2호)
-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 고객만족도평가 대상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나 승인을 받은 모든 여객운송사업자로 확대함(제9조제1항)
-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 등의 출항 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며, 여객선 등에서 선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5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국가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관리자를 돕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7항)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항 간 운송할 수 있는 화물에 기존의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외에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 내의 국내항 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을 추가함(제25조 제1항제2호)
-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등록 후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무등록영업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함(제33조제3항 신설, 제56조제2호, 제5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선박에 대한 유류세

- 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회수, 보조금의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함(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 압류된 내항여객선이 면허 항로의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채권자 등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운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등의 기항지에 접안 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 및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여객 운송이 가능하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 권한의 위임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제53조)

34.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833호, 2012. 06. 05

-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제척·회피 사유와 추천·지명·위촉 철회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35.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수산물부령 제280호, 2012. 06. 07

- 어선 등록의 관청과 어선건조허가 또는 어선

건조발주허가의 관청이 같을 경우, 어선의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 건조발주허가서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고, 어선의 변경등록사항과 어업변경허가사항의 처리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어선의 변경등록과 어업의 변경허가를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증대시키며,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규정된 수수료 관련 내용이 이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6.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13호, 2012. 06. 13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3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농림수산물부령 제286호, 2012. 06. 22

-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일반측량업 등을 등록한 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높이고, 양식어업에 관한 기준 중 양식어업의 종류별 어장의 수심 및 시설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자율적인 어업 활동을 촉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8. 선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81호, 2012. 06. 26

-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 받은 자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재화 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선박의 최대 속도가 25노트 이상인 경우,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선박항행에 따른 국기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함

39.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82호, 2012. 06. 26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소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발급받는 화물선안전무선증서, 화물선 안전구조증서 및 화물선안전설비증서를 하나의 화물선안전증서로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수면 위를 떠서 운항하는 수면비행선박의 만재흡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안전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1일로, 그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4일로 각각 단축함

4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83호, 2012. 06. 27

-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첨부서류 간소화
 -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중 인증신청에 대한 설명서와 인증시험 분석방법 및 절차서 등 인증 판단에 직접 관계가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도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 유창 청소업의 등록기준 중 승양기 장비 보유 대수를 3대에서 1대로 감축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대체 가능 기술자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대학에서의 근무경력도 전공 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함
-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정 수수료 폐지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신청수수료를 각각 폐지하여 민원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처리기간 단축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도모함

4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3897호, 2012. 06. 29

- 유선·도선의 영업구역인 '하천·호소'와 '바다' 대신 '내수면'과 '해수면'의 개념을 도입하고, 유선·도선사업자와 선원에게 출항하기 전에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344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출항 전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며, 유선·도선사업자가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정함
- 바다목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에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 해역을 포함하여 바다목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영업구역 내 중간 기착지의 요건 마련(제7조 제2항 신설)
 - 유선·도선사업자가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를 정하는 경우 그 중간 기착지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유선사업의 경우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도록 하는 등 유선·도선사업 중간 기착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 유선·도선 및 비상구조선의 인명구조용 장비에 드로우 백(throw bag) 추가(제17조 및 제18조)
 - 물에 빠진 승객 등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유선·도선에는 구명줄 뿐만 아니라 드로우 백을 갖추어 둘 수 있도록 하고, 비상구조선에는 구명줄 대신 드로우 백을 갖추어 두도록 함

-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금액 신설(별표)
 - 유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함

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제304호, 2012. 06. 29

-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면허사항 변경 신청 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에게 면허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보완함
-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면허사항 변경신청 기간 등 명확화(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 유·도선사업의 면허사항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청·신고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는 양도·양수한 날 또는 법인이 합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신청·신고는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규정 신설(제5조제1항)
 -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1개월 전에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4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제23923호, 2012. 06. 29

-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1321호, 2012. 2. 17.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박관리산업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범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 구체화(제2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중 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의 전략 및 추진계획,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 및 제5조)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 한국선주협회의

장,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구체화(제7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관리산업인증센터는 인증신청의 접수 및 인증심사업무 외에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연구,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조사 및 인증업무의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인증심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함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제10조)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자료의 관리,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지도,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st.or.kr) 제·개정 법률에 게재하였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고객의 현장에로기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등에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인천테크노파크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부대행검사실
 ☎ 032-260-2288~9 / Fax. 032-260-2235
 e-mail : it@kst.or.kr